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3일, 박수영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20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2024. 11.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2025. 11. 3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6. 3. 16.)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6. 4. 1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4. 15.)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수영의원)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